◈ 북한의 조세제도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방, 사회개발, 복지증진과 같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달리 사회주의 경리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란 국영기업소의 순소득 중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는 거래수입금[10], 국가기업이익금[11] 및 사회협동단체이익금[12]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에 주력하여, 1950년대 초 국가예산의 50%를 차지하던 사회주의 경리수입 비중이 1974년에는 100%에 도달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때부터 주민직접세를 완전 폐지하면서 세금 없는 낙원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13] 이는 사회주의 경리수입을 세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순소득(社會純所得)으로서 당연히 국가예산에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데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리수입의 최대항목인 거래수입금만 보더라도 간접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는 북한이 사유(私有)를 부정하는 기초 위에서 세원 확보의 수단이 공유(共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내부사정을 감안하여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에 한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북한 조세제도의 변천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세금제도를 완전 폐지하였었다. 그러나, 1984년 9월 외국투자 촉진을 위한 합영법 제정과 더불어 1985년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을 제정하여 합영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과세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받아왔다.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이 제정되어, 합영기업만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세제로는 충분한 규율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85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관련세법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북한은 1993년 1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이하에서는 '외국인 세금법'이라 함)을, 1994년 2월 21일 '외국투자 기

10)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그 제품의 도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 중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의 일종임.

11) 생산부문은 물론 유통부문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국영기업소가 그 기업경영 활동에서 얻어지는 기업순소득 가운데서 기업적립금을 제외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법인소득세의 성격임.

12) 각종 사회단체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등이 국가로부터 각종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하에 경영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입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적 성격의 납부금임.

13) 북한은 1972년 헌법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고 선언하였다 (1972년 헌법 제33조).

업 및 외국인 세금법 시행규정'(이하에서는 '시행규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현행 세금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4] 첫째, 북한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사유재산 소유(건물, 선박, 비행기, 차량)를 허용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를 신설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이전의 세제는 외국인이 북한 영역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현행 세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외국인이 북한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셋째, 세제를 현실화하여 외국인이 북한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 인상시키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외국인 소득세법을 처음 제정한 1985년도와 비교하여 북한 원화의 가치하락 및 소득인상 추세를 고려, 세율을 보다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금감축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조세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거래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율의 범위만이 규정되어 구체적인 세율은 재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기관 등의 재량에 따라 세금감면의 여부와 그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2.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법

가. 조세체계

외국인세금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가 있으며, 그밖에 지방세가 부과된다.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조세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조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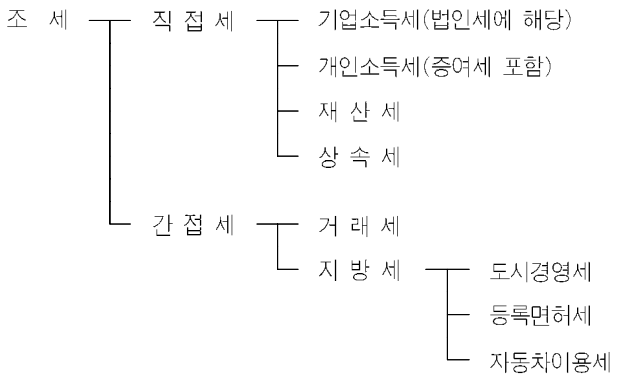

14) 신웅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1998. 8. 1, p.213~2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나진·선봉 경제특구 핸드북", 1996. 11. 10, p.162.

나. 외국인세금법의 적용

외국인세금법 제6조는 "이 법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을 말한다(외국인세금법 제2조).

외국투자기업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정기관이란 재정부와 도·시·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를 의미한다(외국인 세금법 제2조, 시행규정 제3조).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분리하는 경우와 소재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20일 내에 세무등록 또는 세무변경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시행규정 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내는 세금은 북한원화로 계산하여 수익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기업)가 공제 납부하여야 한다(외국인세금법 제4조, 시행규정 제8, 9조).

북한은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체결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외국인세금법 제7조, 시행규정 제12조).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에 조세 관련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외국인세금법에 우선하여 그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북한 조세의 종류

가. 기업소득세

북한에서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은 ① 북한 내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 및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know-how) 및 경영관련 봉사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 ③ 북한 영외의 지사, 출장소, 자회사 등에서 얻은 소득이다.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은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포함)부문의 상품판매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식당과 같은 서비스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등이 속한다.

기업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이윤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인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25%이고, 자유경제무역지대나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에 대하여는 10~14%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나. 개인소득세

북한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며 소득을 얻는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북한 밖에서의 소득에 대하여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①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② 배당소득, ③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④ 이자소득, ⑤ 임대소득, ⑥ 재산판매소득, ⑦ 증여소득, ⑧ 개인기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월 근로소득 2,000원이며,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액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소득액이 1만원 이하는 면제이고, 1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최고 1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다.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외국인이 북한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선박·항공기이며, 건물에는 살림집·별장·부속건물이 포함되고, 선박·비행기에는 자가용 선박·자가용 비행기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은 북한 내에서 재산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내에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재산세 과세대상액은 재정기관에 등록된 가격으로 한다. 재산세의 세율은 건물은 등록가격의 1%이며, 선박, 비행기의 경우에는 등록가격의 1.4%이다.

라. 상속세

북한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에 적용되며, 북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받은 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상속세율은 상속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며, 상속액에 따라 최고 3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마. 거래세

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생산물의 판매와 봉사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다.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①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한 물자를 북한 영역 안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② 상업(무역부문 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③ 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이자와 예금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이다. 거래세의 부문별 항목의 구체적인 세율의 결정은 재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바. 지방세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있다.

- 도시경영세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 임금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 내에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하고, 180일 이상 거주 외국인은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달 10일 내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회사가 공제 납부한다.
- 등록면허세 :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정해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 자동차이용세 :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시행규정에 정해진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재 및 신소[15] · 소송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부과한다(외국인세금법 제51조, 시행규정 제74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 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첫째,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둘째,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리며, 셋째,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외국인세금법 5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신소를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내에 신소 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외국인세금법 제54·55조, 시행규정 제 78조). 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외국인세금법 제55조, 시행규정 제79조).

【金 正 晩】

15) 북한의 조선말사전에 따르면, 신소(申訴)란 '사회적으로 정당한 요구나 시정할 조건 또는 개인의 억울한 사정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두로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있음.